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찾는 길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들어가며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매년 1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숨지는 나라입니다. 떨어지고, 끼이고, 물체에 맞는 것처럼, 간단한 안전조치들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재래형' 사고로 하루에도 3~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 매년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도 수천 명이 생겨납니다. 유가족들은 어제까지도 함께 삶을 나누던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었다는 고통을 미처 실감하기도 전부터, 이중 삼중의 아픔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노동자 개인의 잘못을 들먹이며 책임을 서로 미루려는 회사, 상실의 고통을 '합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들, 사망 당사자와 가족들의 권리 보장은 뒷전인 대응 체계 때문입니다.

김용균재단은 이런 고통스러운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의 사망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한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과제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충분한 존중과 지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의 용기와 노력이, 노동자 사망사

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었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많은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내서에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찾는 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으로 고통받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떠난 사람들의 죽음은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의 탓이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싶고,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다른 세상을 찾는 길이 됩니다.

많은 유가족들이 다른 유가족을 만나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찾는 길

0
산재피해 유가족의 이야기 | 07

1
산재사고 이후 진행 과정과 특징 | 19
1.1 사고 이후, 전체 진행 과정 | 20
1.2 산재 사망사고 대응의 특징 | 23

2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 | 27
2.1 첫날의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 28
2.2 회사와 경찰에 다음을 요구하세요 | 30
2.3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 32

3
현장조사와 경찰조사 대응 | 35
3.1 철저한 조사로 회사의 은폐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 38
3.2 경찰 등의 사고 조사 | 40
3.3 고용노동부 조사 | 43
3.4 유족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 | 44

4
유가족의 요구 | 51
4.1 진상규명 | 52
4.2 책임자 처벌 | 54
4.3 기억과 추모, 재발 방지 약속 | 56
4.4 진정한 사과와 보상 | 57

5
투쟁·장례·합의 | 63
5.1 투쟁 | 64
5.2 합의, 산재보험, 소송 | 67

6
합의 이후, 심리적 문제 | 77
6.1 산재사고로 인한 유가족의 심리적 외상 | 78
6.2 유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위기 | 80
6.3 돌보기의 과정 | 86
6.4 작별과 애도 | 87

〈부록1〉 집단적 산재사고의 경우 | 89
〈부록2〉 유가족 곁의 사람들에게 | 93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2020년 10월 12일 발행

T. 02-833-1210 H. yongkyun.nodong.org E. yongkyun2019@gmail.com
A.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40가길 2, 203호

0

산재피해 유가족의 이야기

마음이 계속 변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유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산재피해가족모임)다시는'의 다른 유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미 겪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될 거다, 회사가 어떻게 회유를 할 거다, 감정적 심리적으로도 어떨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죠."

– 고 김태규님의 누나 김도현님

"노동조합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100% 믿어도 될 사람인지, 나한테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같은 유가족인 내가 가서 얘기해주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랑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

0
산재피해 유가족의 이야기

0.1

사고 직후, 회사에서 우리 애 탓을 하는 거예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1. 청년 노동자 故 김용균

-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1994년생)은 2018년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했습니다. 그가 하던 일은 석탄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홀로 일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려는 회사에 맞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동료들의 트라우마 치료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인 2019년 2월 9

일, 고인의 사망 62일 째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노동자 민주사회장'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표류 중이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 2019년 8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이 발전산업 민영화와 위험을 하청에게 떠넘긴 '외주화'에 있다고 선언했고, 현재(2020년 10월) 원하청 사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님은 연대했던 사람들과 함께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을 만들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애 얼굴 보고, 울고 정신없었는데, 하청회사 이사 등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용균이는 너무 성실하고 착했지만 고집 있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1, 2분 지나서야 '아닌데, 용균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용균이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상신호를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회사에서 말한 거랑 완전 다르게, 무조건 지시가 내려오면 할 수 밖에 없대요. 그래 가지고 저도 알았죠. 이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고, 용균이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조합이랑 시민대책위에도 바로 마음을 열지 못 했어요.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모든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주는지 지켜보면서 믿을만하구나 생각하게 됐죠."

"유가족들이 제일 막히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고. 근데 제가 용균아빠 설득할 때도 그랬고, 빨리 처리해서 화

장시키는 거하고, 조금 늦게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설득했거든요. 진상규명해서 억울한 거 풀어줘야 한다. 그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더 싸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유가족들도 여건만 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균이 때는 톱니바퀴처럼 여기저기서 다 잘 맞아들어가서 싸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운이 좋았다는 생각 들어요. 보통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싸우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바탕을 주변에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0.2

현장에 가봤더니, 훼손돼 있었어요

고 김태규 노동자의 누나

1.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추락사고

-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1994년생)는 2019년 4월 10일 경기 수원시의 공사현장의 5층 높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주)ACN이 발주하고 은하종합건설이 시공을 진행하던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 유가족들은 정신없이 고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시공사는 단순 실족사라고 했는데, 유가족들은 사고현장을 방문하고서야 단순 실족사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고인은 안전화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안전장비 지급이 안됐고, 화물용 승강기에 불법적으로 작업자를 탑승시키거나 출입구를 개방한 채 운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훼손되어 있었고, 관리자가 제세동기를 이용했다고 했지만 현장에는 제세동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가 잦다는 이유로 초기수사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유가족이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여 재수사를 했으나, 검찰은 시공사 대표와 발주처를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항고장'과 '재정신청'을 내고,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그 결과 2020년 6월 19일, 1심 재판부는 산안법 위반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과실치사죄로 시공사는 벌금 700만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은 징역1년, 승강기 운용자는 징역10월, 승강기제조업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 고 김태규님의 누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어요. 형사가 부검했으니까 장례 치러도 된다고 해서 형사 말만

믿고 장례를 치룬 거예요. 1년 지나고 보니 제일 아쉬운 게 장례를 치러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 찾아갔는데 경찰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동생 안전모… 그러니까… 증거품 될 수 있긴 한데 챙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했다는데 그 사람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앞으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목격자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담당 팀장이 양치질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각자 따로 산다메?" 이러는 거예요."

"원청 이사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제가 그때부터 정신과 치료 받은 건데-니 동생이 여기서 재수 없게 죽어가지고 공사 지연되지 않았냐고,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가 지역사회다 보니 그 사람(하청업체 사장)이 수원에 인맥이 많아요. 용역업체 사장은 저희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애는 이미 죽었으니 빨리 합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사장이 주변사람들에게 기자회견 못하게 막으라고 전화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20일부터는 저한테 '누님 죄송합니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를 매일 하나씩 보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문자 보내고 뒤에서는 그렇게 합의만 종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금 노리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우리랑 주소지가 다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규랑 같이 되어있으니까요.… 거기 팀장이 하는 말이 간 놈은 간 놈이고 노후대책 하시라고… 저희 할아버지 그 소리 듣고 계속 우셨거든요. 거기서."

0.3

현장 보기 전에는 장례를 못 하겠다 했죠

고 안준호 노동자의 아버지

1. 젊은 건설인 故 안준호 노동자 사고

- 고인은 1990년에 태어나 현대건설에 입사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9년 7월 사고가 나는 날까지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시가 발주를 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여러 하청업체와 함께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7월 31일 갑작스런 폭우로 터널 안에서 일하던 비정규노동자들이 위험해졌으나 그들에게 위험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직접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 당시 배수터널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과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완공 이후에는 양천구청이 운영책임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 서울시, 양천구청, 현대건설, 하청업체들의 복잡한 책임과 권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수문개방의 권한과 연락, 비 예보시 작업 진행, 터널 내부작업 시 비상용기구 마련, 외부와 소통도구 구비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스템에 누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소통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관련자들은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하다며 서로에게 사고의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 2020년 8월, 유가족들은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임신상태였던 고인의 부인은 출산을 했고, 빗물펌프장 근처 어린이안전교육센터 앞에는 희생노동자들의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2. 고 안준호님의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했다는데 다 엉터리, 그게 나중에 밝혀졌죠. 그리고 자동으로 문이 개폐가 되는 것들.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 수문관리에요. 책임주체가 누구냐. 아직 준공이 안 끝나서 현대건설에서 일임하기로 했다, 아니다 벌써 다 넘겼다, 그런 책임공방을 계속 하더라구요."

"현장소장은,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 수문에 관제탑 있는 거 거기 비밀번호도 모르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서울시에 다 넘겼다. 이런 식으로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긴지 몰랐어요. 전문용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거기서 4년, 5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현장을 처음 본 거잖아요."

"익사로 나왔으니까 장례를 치러야겠는데 언론에 보니까 또 안에 들어가는 입구, 통로를 막았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안에 가두고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못하겠다, 그래서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현장검증이 이뤄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주체가 있잖아요. 회사, 관, 하청 여러 곳이 엮여 있는데 유족의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인지 바라볼 거 아니에요. 원청 같은 경우에는 발뺌하는 원청이 있을 거고 껴안은 원청이 있을 거고, 도급을 준 게 관이라면 관에 떠넘길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도 생각이 다 틀리니까. 저는 아빠지만 집안에 어른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하고 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0.4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고 곽○○ 노동자의 자녀

1. 플랜트 노동자의 죽음

- 곽00님은, 원래 주로 여수 지역에서 일하던 플랜트 노동자였습니다. 플랜트 노동자는 공장과 발전소 등 커다란 산업시설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 플랜트 노동자는 큰 공장이나 발전소, 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 역시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석유화학공장의 대정비 작업에 참여해, 약 400kg의 버티컬 펌프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펌프를 매달고 있던 벨트가 끊어지면서 펌프 밑에서 위치를 잡으려고 작업하던 고인이 숨지고, 동료 노동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 작업 당시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끊어진 벨트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4명이 한 팀으로 하던 작업인데 사고 당일에는 3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 유가족은 1주일에 걸쳐 하청 회사와 보상금 및 사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원청회사는 합의 후 장례식에서야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았고, 형사 재판 중인 하청 회사에서 탄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하청 회사의 요청과는 달리, 유가족이 생각하는 진실만을 담아 탄원서를 써주었지만,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2. 고 곽○○님의 자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 할까 하다가 또 못 참겠다, 싸우고 싶다가.. 그런 거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때는*

회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데 같고, 나는 덩그러니 혼자 개인인 거 같은데 그럴 때 노동조합이 옆에, 그냥 연락이라도 하는 정도로 있다는 것도 엄청 위안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내려갈 때는 별로 합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원청 사과 받는다든가 뭔가 그런 거 없으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다 생업 접고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다들 나한테만 결정하라고 하고… 그 때 현장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야지' '나는 싸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혼자서 막 싸워야지, 싸워야지 한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원래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원청이 합의하고 나서 장례식 하기 전까지도 안 왔어요. 그래서 1차 하청하고 합의하고 도장 찍고 나오면서, 원청이 장례식마저도 안 오면 이 돈 다 돌려주고, 두 배로 물어주고, 그 원청 회사가 일본회사였는데, 일본 가서도 시위하고, 여기서도 시위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니까 원청 꼭 와서 사과하라고 해서. 결국 왔어요."

"원청 회사에서 장례식장에 왔는데, 와서 자기들 힘들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 너무 지쳐서 그랬는지, 아빠 장례식장이니까 소란 일으키기 싫어서 그랬는지 화를 제대로 못 냈거든요. 근데 그 때 화를 제대로 못 낸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라도 가져가서 끼얹었어야 하는데, 근조화환 던졌어야 하는데… 막 이런 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슬픔은 학습되는 것

"처음에 동료 분들한테 질문해보면 그 작업장이 위험한 줄도 몰랐대요.
그래서 한 번도 일하는 게 무섭고 두려웠던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였는지 너무 무덤덤하고 무감각해보였어요. 동료가 죽은 게
슬프지 않은가 생각할 만큼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늦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고단해요.
서로 떨어져서 일하고 교대근무를 해요. 밤새 일하고 와서 자죠.
그 다음날은 휴무, 그 다음날은 주간 근무, 그 다음엔 야간 근무,
쉬는 날엔 잠만 잔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기숙사지 하청회사에서
원룸 건물을 군데군데 얻어준 거예요. 기숙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유대감 같은 건 없어요.
내가 힘들면 타인의 존재 자체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슬픈 일이 일어나도 같이 슬프죠. 다 배워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위험하다는 것도 배워야 알고, 동료가 죽은 것의 의미도 배워야 알고."

김용균이라는 빛1. 백서

1

산재사고 이후 진행 과정과 특징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유가족들에게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책임은 회사에 있는데 회사가 아니라 유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회사가 자료를 다 가지고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뿐이예요. 자료를 요청할 때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이지 회사랑은 관계없다고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1
산재사고 이후 진행 과정과 특징

1.1
사고 이후, 전체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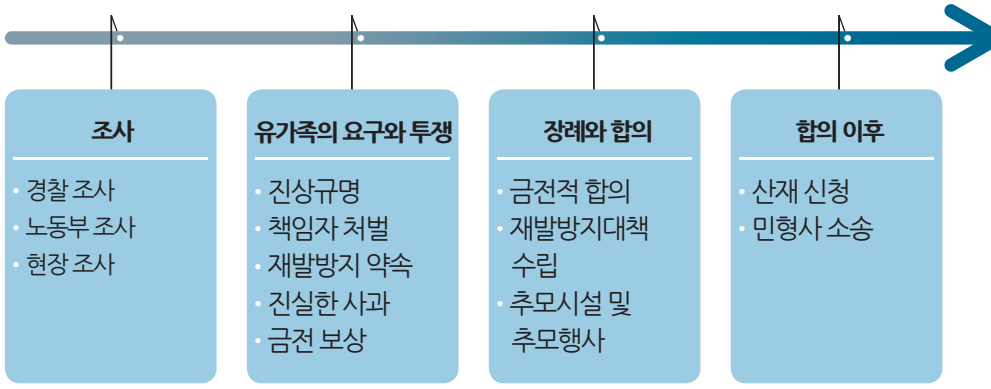

경찰 조사 / 고용노동부 조사 / 현장 조사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경찰이 기본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합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타살이라면 누군가의 '고의'가 개입된 살인사건인지, '과실(실수)' 사건인지 분류합니다. 유족이 사망원인에 관하여 의심을 갖는 경우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서 부검을 합니다.

경찰	타살인가	과실인가	부검필요	국과수에 부검의뢰
			부검불필요	사망원인이 명확하고, 유족 의사 존중
		고의인가	살인사건	
	자살인가	자살동기 조사 후 수사 종결(직장스트레스, 금전관계, 연인관계 등)		

대개는 경찰 조사 며칠 뒤에 고용노동부(노동청)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사건에 한해서 '경찰'의 지위에서 수사를 합니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는데, 작업현장의 위험에 관해서는 경찰에 비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사망사건(중대재해) 조사의 경우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안전보건공단 소속)와 합동으로 조사하는데, 경찰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므로 현장조사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화재나 감전, 폭발사고, 익사 등의 경우에는 소방, 한국전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경 등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 지청)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 조사(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특수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소방, 한국전력, 국과수, 해경 합동 조사 (집단사고, 화재, 감전, 폭발, 익사 등)	

참고로 경찰이나 노동청은 범죄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검찰청(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합니다.

요구와 투쟁

유가족의 요구는 사건에 따라, 그리고 유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가지로 유형화해보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진상규명),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책임자 처벌),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재발 방지 약속), 회사 책임자의 진실한 사과를 받는 것(진정한 사과), 정당한 배상·보상을 받는 것(금전 보상) 등입

니다. 전부를 요구하는 유족도 있고, 일부를 요구하는 유족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의 우선 순위도 다 다릅니다.

유가족이 정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손잡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투쟁의 대상은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때로는 진상규명이나 작업중지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는 노동청이나 경찰이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장례와 합의

장례 시기는 수사진행 과정, 유족의 요구와 투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이 부검을 요구하지 않고 투쟁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검찰의 변사자 검시가 끝난 직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부검을 하게 되면 부검 종료시점까지 장례가 미뤄집니다. 변사자 검시나 부검이 끝나더라도 유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 장례를 미루고 투쟁하기도 합니다.

유족들은 회사 또는 정부와 여러 종류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합의는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 손해배상금액에 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서'(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김)를 써주는 대신 형사합의금을 받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합의 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관한 합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나 추모시설 건립에 관한 합의 등도 있습니다.

산재신청과 인정, 형사 고소·고발, 민사소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지급받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것과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용직이거나 임시직, 이주노동자(미등록 또는 불법체류자)여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피해자의 유가족으로서 수사기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수사절차, 나아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민사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경우라면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관하여,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손해액 전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

산재 사망사고 대응의 특징

산재 사망사고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회사와 재해자의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걸림돌은 회사입니다. 회사와 재해노동자·유가족의 입장은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사업주의 잘못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받게 되니 가능한 한 책임을 감추려고 합니다. 반면 재해자와 유가족은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노동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혀서 제대로 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 입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는,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재해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사망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생길텐데 회사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보상금을 제시하거나 장례절차를 도와주면서 선심을 쓰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처음 당하는 재해자나 가족들이 대응 방법을 잘 모르고 힘들어할 때, 회사를 믿고 의지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말을 다 믿지 마시

고, 앞으로 안내드릴 순서에 따라 대응하십시오.

싸워야만 얻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재 사고를 맞닥뜨린 후 '세상이 이런 줄 몰랐다'고 하는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회사와 정부, 경찰은 힘없는 개인을 돕는 줄만 알았는데,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 이 사회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회사 말고도 부딪치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는 경찰이나 고용노동부는 유가족에게 친절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만난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거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재해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비수를 날리는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 대응을 하다보면 매순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보면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싸워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회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한다면 좋겠지만, 정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다가 중단해도 됩니다. 유가족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우 힘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유가족들도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둘러싼 진실이 쉽게 밝혀지지 않고, 보상 등의 합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다른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사와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끝내 원하는 답을 얻어내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요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간혹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사회적 입장 차이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따라서 회사와의 협상이나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를 당한 처지에서, 남은 가족들끼리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지만,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뜻을 모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입장과 태도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꼭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나, 이 정도면 '적정한 합의'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 고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고 나면 '전문가가 알아서 해 주겠지' 생각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면 '노동조합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가나 법률전문가의 입장과 유가족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은 모두 다 물어보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장을 잘 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변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유가족들은 큰 슬픔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사고 직후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므로 마음이 계속 변하기도 합니다. 어제 싸우자고 마음 먹었다가 오늘은 그만두고 싶고, 오늘은 소송을 걸겠다고 생각했다가 내일은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과 태도에 많은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에 충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고 싶거나 따져 묻고 싶거나 요구가 있다면 제대로 표현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마음과 상황에 충실한 결정을 하셨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100%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열심히 투쟁하였거나, 일찍 합의를 하였거나, 조용히 장례를 마무리하였거나, 어떤 경우라도 가까운 가족을 잃었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의를 잘 해도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싸운 뒤에도 '얻은 게 없다'고 느끼고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진상이 밝혀지면 회사가 제대로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형식적 사과에 상처를 받은 유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과일지라도 회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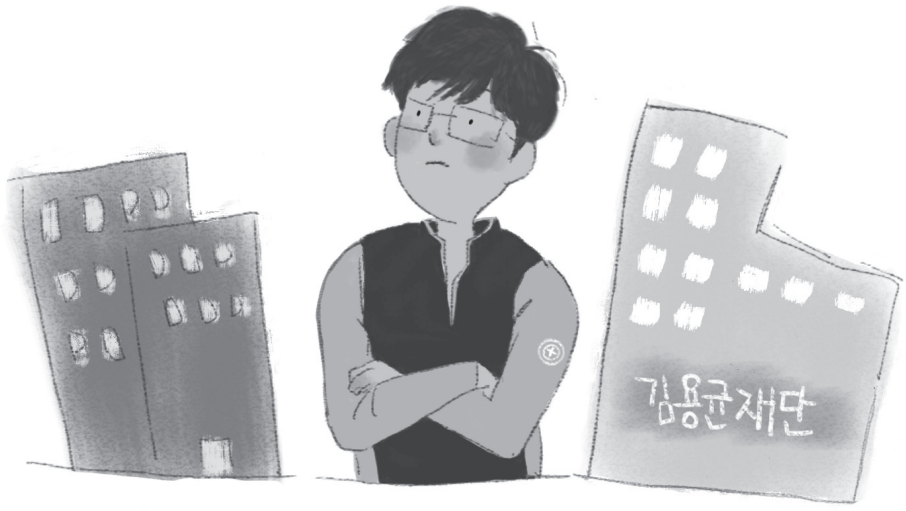

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려던 기업에게 책임을 지웠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응을 마무리해도 됩니다.

| 여러분 곁에 '산재피해가족모임'이 있습니다

막막하고 경황도 없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산재피해가족모임, 김용균재단 등입니다. 많은 산재피해 유가족들은 같은 사고를 겪은 유가족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도, 노동조합도 믿기 어려울 때,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유가족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겪은 동질감도 있고,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싸웠던 이야기나 몇 달이 지난 뒤 불현듯 찾아온 우울감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 등 앞서 이 일을 경험한 유가족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유가족을 만나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2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

첫날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빠르게 합의하지 마세요. 도장은 완전하게 합의된 이후에 찍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나 언론인터뷰는 나중으로 미루세요. 준비가 되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력 받을 곳에 연락하세요. 노동조합과 김용균재단이 함께합니다.

-동료 작업자와 목격자를 만나고, 사고 현장에 직접 가겠다고 요구하세요.

-회사와 동료를 만나거나 사고 현장에 가시면 꼭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장례 절차는 합의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빈소를 차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

2.1

첫날의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의 사고 소식을 들으면 믿기 어렵고 황망할 것입니다. 경찰이나 병원, 혹은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그래도 혹시' 하는 실낱같은 기대와 두려움을 갖고 연락받은 곳으로 달려오셨을 겁니다. 보통은 회사측 관계자나 경찰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유가족이 정신이 없을 때, 유가족과 빨리 합의해서 회사의 책임을 감춘 채 사건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망을 확인하면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화내지 말 걸", "아침에 따뜻한 밥 먹여서 보낼 걸", "회사 가기 싫다고 할 때 그만두라고 할 걸" 등 온갖 후회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고인도 여러분이 죄책감을 갖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고인도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재해자 과실'이 아닙니다

회사 사람을 처음 만나면 대부분 '재해자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는 작업자 과실이 아닐 뿐더러, 설령 작업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일터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재해자 과실'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김군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서, 합의서에 '김군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랑하는 아들 김용균을 잃은 김미숙님도 "용균이는 너무 성실하고 착했지만 고집이 있어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김용균님의 죽음은 회사 책임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면 '생각해보겠다', '의논해보겠다'고 미루세요

회사가 '재해자 과실'이라고 말하면 유가족들은 '내 가족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진상규명이나 배상을 요구하면 안 되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가족의 마음이 흔들리면 회사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으니 보상을 해주겠다거나,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생각해보겠습니다" 혹은 "가족들과 의논해보겠습니다"라고 미뤄두어야 합니다. 빨리 합의해야 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며칠이라도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회사 주장의 문제점도 알 수 있고, 이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요구하면 '나중에 조사받겠다'고 하세요

사고가 나면 경찰이 첫 조사를 합니다. 경찰이 유가족에게 바로 조사를 하자고 하고, 조사를 빨리 받지 않으면 장례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첫날 조사를 요구하면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말하고 미뤄두세요.

경찰은 사망한 노동자가 요즘 괴로워한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싸우지 않았는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무심코 답을 하면 이것이 죽음의 원인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사고로 추락해서 사망했는데 술을 마셔서 실족했다고 하거나,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준비를 해야 하고,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언론의 취재에 바로 응하지 말고 명함을 받아두세요

사고가 나면 언론이 먼저 달려올 수 있습니다. 언론은 회사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질문을 하는데, 유가족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인터뷰에 응하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이 유가족에게 피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언론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주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취재를 하겠다고 하면 명함을 받아두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언론을 잘 분별하여 이후에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2.2

회사와 경찰에 다음을 요구하세요

회사와 경찰에 다음의 내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가족의 권리입니다.

|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세요

회사 관계자를 만났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왜 사고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세요. 회사 관계자에게 처음 듣는 사고 당시의 이야기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회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일도 많으니까요.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은 유가족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그곳에서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설명을 해줘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녹음을 해두거나 기록을 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동행하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의 이야기는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작업자나 목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동료작업자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회사 관계자와는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 기억이 남아있을 때 정확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료 작업자나 목격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감추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들도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거나, 불이익이 두려워 자세한 이야기를 꺼리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과 다르게 나중에 진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를 존중하라고 요구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나 경찰과 언론은 유가족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잘 존중하지 않는 회사는 유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을 압박해서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경찰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려고 유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나 경찰이 고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유가족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과하고 존중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사고 현장에 가서 볼테니 현장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하세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작업을 재개하려고 현장을 치워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직접 가서 보겠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겠다고 요구하면 회사는 '안 된다'는 이야기부터 합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고인이 마지막 일했던 장소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사고 현장을 가기 전에 동료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등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자 없이 현장에 가게 되면 꼭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으시고, 현장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면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놓으세요.

2.3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주세요.

| 산재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홀로 회사와 경찰과 언론을 상대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고 신뢰할만한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믿을 수 있을지 고민도 되실 겁니다. 사고가 난 일터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노동조합은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조직이므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균재단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단체에 연락주세요. 먼저 아픔을 겪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유가족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결정을 하는 데에는 조력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력자에게 작은 일 하나라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가급적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놓고 재판을 해야 할 경우도 많은데, 회사에 비해 유가족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사진을 남겨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신도 없고 마음도 아픈데 일일이 질문하고, 녹음하고, 사진을 찍는 일이 스스로에게 잘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런 일을 겪으셨던 분들은, 초기에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일에 대해 조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녹음을 하려고 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회사가 방해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들이대면서 녹음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주눅들지 마세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유가족의 권리입니다.

장례는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치러야 합니다

고인을 두고 협상을 하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고인을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족 모두의 마음이니까요. 일가친척들도 빨리 장례부터 치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면 회사는 압박을 받을 일이 없으니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장례는 빨리 치르는 것보다 제대로 치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장례식을 하지 않아도 빈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 빈소를 차려서 고인의 동료들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유가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장례비용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장례를 미루고 끈질기게 싸워서 김용균님 죽음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돌아가신 분을 제대로 모시는 길이 아닐까요.

3
현장조사와 경찰조사 대응

"산재사망사고가 나면 유족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기관이든, 노조든 어디든 어디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연락해서 알려주고, 어떤 절차가 있고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걸 나서서 해줄 수는 없나? 저도 어디에 전화해서 알아야 하는 걸 아니까 이 정도 했지만, 그것도 몰랐다면 회사가 제일 먼저 접촉하는 곳이니까 그냥 회사가 하는 대로 따라갈 거 같은 거예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1.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 ☐ 정확한 사고 날짜, 시각, 장소
- ☐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경위
- ☐ 현장보존이 되고 현장훼손이 없었는지
- ☐ 증거확보가 되었는지(CCTV 등)
- ☐ 현장조사 일정(유족 참여를 강력히 요구)
- ☐ 목격자가 있는지
- ☐ 관련자에 관한 수사 일정 ※ 관련자: 목격자, 상급자, 동료 등

2. 노동청에 확인해야 할 사항

- ☐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시각, 중지범위
- ☐ 현장조사 일정(경찰과 별도로 할 수 있음), (유족 참여를 강력히 요구할 것)
- ☐ 노동청이 파악한 사고 원인
- ☐ 문제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용

※ 사망사고는 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림(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3. 사업주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 ☐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 경위, 사고 원인, 목격자, 증거
- ☐ 경찰, 노동청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지

☐ 작업중지명령을 준수하여 현장보존이 되고 있는지

4. 동료, 노동조합에 확인해야 할 사항

☐ 목격자나 동료의 진술 듣기(녹음)

☐ 목격자, 노동조합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

☐ 회사의 태도(협조적인지 아닌지)

☐ 사고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개인의 문제로만 보는지,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유족과 함께 싸워줄 것인지)

※ 목격자나 동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노동조합/동료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자료이지만, 제공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동료를 통해서 확보해야 함

☐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기록(로그기록, 설비, 전기 등)

☐ 회사의 업무지시 사항 : 종이문서, 전자문서, 이메일, 문자, 통화내역, 통화녹음,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 사업장내 과거사고 기록

☐ 기타 : 물질안전보건자료(화학사고 등), 안전교육 관련기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건강검진 기록 등

3
현장조사와 경찰조사 대응

3.1

철저한 조사로 회사의 은폐 행위 막아야합니다

유가족들은 산재 사망사고발생 직후 회사나 동료, 노동조합, 병원, 경찰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사고소식을 전해 듣는가에 따라 사고원인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개인차량이나 사설구급차량을 이용했는지 확인하세요

일터에서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119(사외 또는 사내) → 병원 → 112 → 고용노동부 순으로 보고하며, 이에 따라 유가족은 회사 및 병원을 통해 마지막으로,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를 통해 신원 확인이 완료된 후에 사망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에 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받고, 작업중지나 보상 등 회사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고 원인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119나 경찰, 노동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사의 개인차량이나 사설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이후 유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차/사설 구급차 → 병원 → 유가족 → 경찰조사) 이 경우 회사가 사고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조사에 유가족과 대리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는 대부분 사업주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재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가족은 사고조사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그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초동단계인 고용노동부의 사고조사와 경찰 사고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소식을 접한 유가족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습니다. 더구나 재해자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불이익이나 부당함은 없었는지,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회사나 경찰관계자에게 전달받은 내용 이외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기업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믿을만한 전문가 및 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

- 경찰과 노동청에 서면으로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신고 등)을 접수하세요. 수사과정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많은 유족분들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몰라서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 경찰/노동청에 신고를 해두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제204조〉에 근거해서, 사건에 관해서 진술할 권리, 사건처리 상황을 통지받을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 서면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의 유족임을 밝히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1장짜리 서면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 그리고 유족은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사안에 관한 의견, 또는 의사, 노무사, 산업위생기사, 안전보건전문가인 교수 등의 조력을 받아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 경찰이 수사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위 규칙을 근거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3.2

경찰 등의 사고 조사

경찰조사가 우선 이루어집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을 하면 경찰조사가 우선 이루어집니다. 화재나 감전, 폭발사고, 익사 등의 경우에는 소방, 한국전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경 등이 합동으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경찰조사는 통상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 등의 갈등여부, 자살가능성, 원한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수사관은 노동재해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의 노동관계 법률도 잘 모릅니다. 사고원인이라든가 기업 및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경찰에서 진행하는 현장 조사에는 유족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유족에 대한 경찰조사는 법률자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은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조사에 출석해달라고 요청받아 경찰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들이 아직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전이나, 슬픔에 정신이 없을 때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면 유족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혼자 일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노동자 사건에 대해, 경찰이 편파적이고 성급하게 조사하여 '자살'로 둔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서야 사고사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는 유족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조사를 받으러 갈 경우 믿을만한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정황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관계자, 회사의 사주를 받은 동료가 일방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하다면 대면조사를 요구(범죄수사규칙 제63조 – 대질조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하거나, 수사관이 산재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는 수사관 기피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검에 관한 유의사항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하려고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 왜 부검이 필요한지 설명을 요구하세요.
- 설명을 듣고 동의가 안 된다면, 강력하게 '부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1. 왜 부검을 하나요?

"변사"란 자연사 외의 사망으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합니다(변사사건처리규칙 제2조 제1호). 검사나 경찰관이 변사자를 직접 보는 것을 '검시'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수사기관이 보더라도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검(사체의 해부)을

합니다. 혹은 유족이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면 부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경찰의 설명을 듣고도 사망원인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부검을 통해서 사망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망자를 두 번 죽인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싶다면 부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락사, 프레스등 기계의 협착 등 사인이 명확한 경우에도 부검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근무 중 음주로 인한 개인의 실족했다", "평소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의견을 들어서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지연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부검감정서를 받기까지 몇 주일 정도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설명대로 부검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 유족이 원하지 않아도 부검이 진행될 수 있나요? 막을 방법은 없나요?

부검은 유족의 의사에 따른 부검과,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검으로 나뉩니다(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 제219조, 제221조의4). 즉 유족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부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검에 거부감이 큰 우리나라 정서상, 수사실무상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 규정에도 유의사항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41조 제4항, 범죄수사규칙 제139조 제1항)
-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시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 유족의 건강·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경청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변사사건처리규칙 제22조 제3항, 제4항)

3.3

고용노동부 조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사고조사를 하러 나옵니다. 경찰조사와 달리 노동관련 법률과 산재 관련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 공식적인 사고원인을 확정하게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는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전문가, 소방서 등이 주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당일, 몇 시간에 걸쳐, 현장을 보존하면서 간략하고 직접적인 사고조사를 합니다. 사고에 따라 며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날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전면작업중지와 특별근로감독 등 행정조치를 할지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조사이고,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실제 사고조사 기본 매뉴얼조차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로감독관의 성향과 태도, 경험에 따라 사고원인이 규정되기 쉽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계기구의 결함, 작업절차 및 방식,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 각종 서류의 허위작성 등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 측이 작성한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거나 공장에서 화재발생 사고가 나면 노동관계 법률과 무관한 소방당국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이 결정됩니다. 그 경우 해당 사업장 작업환경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유족 및 유족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를 요구하면 "피의사실공표", "수사방해"를 이유로 유가족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목동 빗물펌프장 현장에서 2명의 하청노동자가 터널에서 작업하는 도중 비가 내려 수로가 열리게 되었고, 그 사실을 작업자들에게 전달할 방법도 수로를 차단할 방법도 없어서, 위험을 전달하러 간 노동자까지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조사에는 유가족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수문개폐의 책임주체가 공사를 맡긴 서울시인지, 현대건설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책임공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요구했고 현장검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 "수사방해"의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조사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초반 현장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할 뿐 아니라, 사고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설명회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에도 공식적 사고조사 내용을 유족이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3.4

유가족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

유가족이나 동료들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증거훼손과 증거인멸을 자행하거나 사업주의 관점에서만 사고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원인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에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 방법 중 하나가 유가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입니다.

현장조사에 유가족이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 법적 기준으로는 피의자나 관리자만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가족이 현장 방문을 요구하여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현장방문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회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삼척의 삼표시멘트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었고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 현장에 들어가보겠다고 요구했고, 원청업체는 그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장례를 미루고 원청회사의 책임을 묻고 사고원인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사고현장에 들어가서 그곳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때 회사는 현장사진을 찍는 것은 안 된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사고현장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사고 현장을 들어가는 것은 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현장을 보존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고 이미 그렇게 했던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유가족 참여로 현장 사고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현장조사로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적절한 보상과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고대응 경험이 많은 노동단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은 유족의 현장조사 참여 권리를 '유족의 현장 방문' 정도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훼손된 현장을 복원하고,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사가 되려면 현장방문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가족 뿐 아니라 현장을 잘 알 수 있고 사고대응 경험이 많은 노동단체가 함께 참여해야 제대로 조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울산 플랜트현장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를 잃은 자녀는 사고 이후 현장을 들어가 봤지만 그 곳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가 떨어졌는지, 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곳을 잘 아시는 노동조합 활동가가 옆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산재사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회사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고 가족의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전문가나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유가족이 현장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산재 사고에서 유가족들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동료들을 대동하여 충분히 설명 들으면서, 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받는 현장조사를 요구합시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장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 현장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우면 주변의 활동가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작업현장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다릅니다. 건설현장인지 서비스사업장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제조업이어도 기계에 끼었는지 떨어진 것인지 등에 따라 살펴봐야 할 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사고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현장 체크리스트 외에 일반적인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작업에 대해서나 사고현장, 노동환경 등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물어볼 때는 여러 명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하는 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 ‖

- 사고가 난 구체적 작업 장소와 시간, 사고형태
- 사고 난 이후 최초 발견자, 발견 당시의 상황과 이후 조치과정
- 작업과정이나 노동환경 확인(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유해위험작업여부, 하청업체 소속일 경우는 불법적인 지시존재 여부, 작업지시서, 작업매뉴얼 또는 작업지침서, 작업보고서 등)

‖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자료 ‖

-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안전보건규칙)」을 확인합시다. 이 규칙은 1

편(총칙)·2편(안전기준)·3편(보건기준)·4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구분되고, 1편(총칙)은 작업 종류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1편을 확인했으면 고인의 작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보면 무엇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 작업자의 경우 '크레인'이라고 검색해 보면(컨트롤+F), 규칙 제86조 제1항 본문에서 '크레인에 사람을 태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많아서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찾아봅시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하는 '안전보건기술지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작업별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레스 작업자의 경우 '프레스 금형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찾아보면 됩니다. 기술지침에서 안전을 위해서 지키라고 강조한 사항이 사업장에서 어겨졌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체크리스트 만들기(예시) ‖

* 현장체크리스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1~2곳을 살펴볼 때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사고가 난 작업과정을 볼 때는 여러 지점을 봐야 합니다.

1. 계단을 이동하는 작업의 경우

- 계단이나 계단참에 물기가 없는가
-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가
-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 계단의 높이는 적당한가
- 작업자가 계단에 부딪힐 위험은 없는가
-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있는가
- 안전난간이 구비되어 있는가
- 파손되거나 손상된 계단은 없는가
- 조명은 기준치에 해당해서 넘어질 위험이 없는지 등

2. 컨베이어 벨트 작업(동력전달 장치)이 있는 경우

- 작업자의 신체 일부나 작업복이 끌려가거나 낄 위험은 없는가
- 컨베이어 벨트에 덮개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나
- 이음부가 드러나 있지는 않나
- 비상정지버튼이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나
- 비상정지버튼이 눌러지면 잘 작동이 되나
- 비상정지버튼이 아닌 다른 장치가 있나
- 방호장치(울타리 등)가 제거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되어있나
- 수리 보수 조정 등 작업을 할 때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는가
- 조명은 기준밝기에 해당하는가
- 찔리거나 베일 위험은 없나
- 무리하게 몸을 집어넣거나 구부리거나 해야 하는 구조인가
- 평상시 고장이 없었나

- 작업할 때 혼자 일을 하나
- 지급되는 안전장비는 무엇인가 등

3. 추락사고의 경우

-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고문구가 있는지
-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지
- 안전모나 안전대(허리띠)와 지지로프가 지급되었는지
- 추락에 대비한 비계(아시바)나 방호망(그물), 작업발판이 설치되었는지, 방호망의 성능은 규격에 맞는지
- 조명은 기준밝기에 해당하는지 등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 되나요?

- 대화에 참가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내용과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녹음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엿듣고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 대화를 녹음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대화에 참석해서 몇 마디라도 거들어야 합니다.
  - 경찰, 노동청, 회사, 동료 등과 만나거나 통화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녹음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쓸모있는 내용은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
유가족의 요구

제대로 싸워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먼저 무엇을 요구할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유가족의 요구

4.1
진상규명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싶은 가족의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산재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현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유가족들은 그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으로는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가족이 나서야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포스코에서 2020년 2월 산재사고로 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사망한 노동자 가족에게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니 빨리 장례를 치르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

이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부검을 진행하여 이것이 '사고사'임을 밝혀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음을 당한 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조사를 했지만, 유가족은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이 조사에 대응했고, 합의서에 따라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정부에 진상조사 진행과정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때처럼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은 오로지 사고가 난 그 순간, 누가 어떤 작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물론 사고가 난 순간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그와 더불어 왜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상적으로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 사실확인을 넘어, 컨베이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데 '왜' 위험한 곳에 몸을 넣어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어떤 작업 환경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 어떻게 일을 해야 했는지, 산재사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위험요소들이 평소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조사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만들어 낸 원인을 정확히 알면 그것을 개선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산재사망사고는 넘어지고 끼이고 부딪히고 떨어지는 아주 간단한 유형이 많다고 합니다. 왜 떨어졌는지를 알면 다른 작업장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요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조심하자'는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 산재 사망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사고원인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또 다른 죽음을 막는 시작점입니다.

>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

정확한 설명과 정보 요구하기

유가족들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안이나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2020년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 사망자 중 일부는 시신의 훼손이 심해 부검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절차만을 따졌던 기관은, 가족들에게 부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부검이 이뤄진 다음에 알게 된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설령 부검이 필요하더라도, 사망자의 시신에 칼을 대는 것이므로 가족들이 마음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사고 수습과 조사과정 전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면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건조사 과정도 언론을 통해 듣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회사, 경찰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항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유가족이 나서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족이 요구하지 않아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만들어나갑시다.

4.2

책임자 처벌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은 회사를 운영하며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기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져야 합니다. 특히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원청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말단관리자들이나 하청업체만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한을 가진 이들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020년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 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결정한 것은 원청인 한 익스프레스 사업주입니다. 전체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도 한

익스프레스 사업주에게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에 따라 투입되는 노동자의 수, 노동자들의 월급, 일하는 시간, 자재의 품질 등이 모두 결정됩니다. 한 익스프레스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계도 변경되고 무리하게 공사기간도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는 누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도 모른 채 동시에 하면 안되는 작업을 동시에 했고, 이 때문에 화재가 커져서 무려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결정 권한을 가진 한 익스프레스 사업주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원청인 한 익스프레스의 사업주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원청의 관리자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아직은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받게 할 제도나 법이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유가족이 원청 책임자를 상대로 계속 요구하고 투쟁하면 이들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법 때문에 완전하게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라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권한을 가진 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고 원인을 개선하려고 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는, 용균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그 다음으로 힘든 것이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유가족의 마음일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을 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니 소송을 통해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 다툼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버티는 것 또한 유족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회사측 피고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유족들이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공판 날짜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유족들은 돈 때문에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된 시선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책임자 처벌을 위해 소송을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만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을 방청하고 진행 상황을 알리고, 법원 앞 1인 시위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의 경

우 회사측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 김태규님의 경우 유가족들과 지원 단체들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1인시위도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회사측 피고인 4명 중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만들었습니다.

4.3

기억과 추모, 재발방지 약속

산재 사망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돌아올 수 없지만, 유가족들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른 죽음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이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회사와 사회가 노동자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많은 유가족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남겼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업이 비용을 더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에 기부하도록 촉구하기도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남기기도 하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하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조직문화와 작업환경 개선, 고용형태 개선 등의 약속을 담기도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할 수 있었던 것도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었던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떠밀려 국회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나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조형물과 추모비, 기억하기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 조형물, 추모비를 세우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록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물건들을 따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조형물과 추모비는 의미있고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에 세워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죽음을 기억할 때 죽은 이의 삶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동 빗물펌프장 산재사고로 사망한 이들을 위해, 사고 장소 주변에 어린이안전교육센터가 세워지고 그 곳에 추모비가 섰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추모조형물은 태안화력발전소 안에 세우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 안에 추모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추모조형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죽음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은 죽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며 유가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4.4

진정한 사과와 보상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원인도 규명되면 마지막 남는 것은 제대로 된 사과입니다.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는 대다수의 유가족이 바라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유가족 치유의 시작점

사과는 노동자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점입니다. 사과의 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져야 할 기관과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됩니다. 사과문을 요구하여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유가족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언론에 공개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문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면 됩니다.

유가족들은 진정한 사과를 원하지만, 회사는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잘못이 법적으로 드러나거나, 사안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할 때에만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설령 형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과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자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청이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듯이 사과도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하청업체나 말단관리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산재사고로 잃은 유족은 1차 하청업체와 합의하고 나오면서, 원청이 장례식에 나오지 않으면 합의금도 돌려주고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원청의 사과를 받고 싶었고 결국 원청업체는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라도 원청업체 등 책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금전보상은 유가족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금전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보상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이며, 유가족의 고통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회사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의무이며, 금전보상으로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유족은, 장례식장에 온 사장이 '자기들은 밥도 못 먹고 있고 공장을 멈춘 상태라고, 이렇게 하루 멈추면 손해가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고통이 돈으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전보상을 받아도 이 고통이 상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전보상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당연하게 요구하되, 여기에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족한테 위로금을 주는 게 아니다. 나는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기업에,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왕이 하사하듯이 위로금

을 주고 그건 나는 싫다.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배상을 당연히 해줘야지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다."

가급적 탄원서는 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이 합의를 하면서 '회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유가족에게 탄원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탄원서는 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의 조건으로 탄원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써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탄원서 대신 '합의서'를 법원에 내거나, 혹은 합의를 했다는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라고 해도 문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요청하는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주실 경우 회사가 가져오는 서류에 그냥 서명하지 마시고 꼼꼼히 보고 판단하고 주변의 조언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회사 입장만 들어보지 말고 유가족 분들의 판단도 했으면 좋겠다.*
> *아, 그리고 다 노동자가 잘못했다고 몰아가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 *그렇게 고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의심해봐라.*

"용균이가 일했던 곳이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니까 믿음이 가서 애를 보냈어요. 사고 이튿날인가
현장에 갔는데 국가기밀이라고, 그 안의 모습이 바깥에 노출되면
안되는 기관이더라고요. 저는 유가족이니까 당연히
제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갔죠.
아파트 15층 높이만큼 큰 건물에서 애가 일을 했더라고요.
층마다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옆으로 뉘어있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붙잡고 오르고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애가 무슨 훈련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해요. 제가 갔을 때는 기계가 세워져
있었는데, 기계를 가동하고 있을 때는 분진이 되게 많이 날려요.
그냥 서 있을 때도 그렇게 불빛이 약한데
분진이 날리면 얼마나 더 투명도가 떨어질까요…
용균이가 일했던 곳은 가장 최신으로 세워진 곳이예요, 최신으로.
바깥에서 보기에는 엄청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열악하고 위험하게 일하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일을 이렇게 시킬까.
그런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페토, '그 쇳물 쓰지마라'

하림 곡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것이며
철근도 마들지 말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5

투쟁·장례·합의

"나도 처음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다. 되든 안 되든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억울한 마음은 하든 안 하든 계속 있을 텐데, 풀어야 되지 않을까"

5
투쟁 · 장례 · 합의

5.1
투쟁

유가족은 진상 규명,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위해 여러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우리는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투쟁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유가족의 요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많을 경우 의견이 달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인과 가까웠던 유가족을 중심으로 충분히 토론하여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 유가족의 요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이후 생계를 위해서 금전보상이 필요할 것이고, 책임자를 제대로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모공간이나 조형물 건립, 공개적인 사과문 게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유가족들의 요구는 더 구체적으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목동 빗물펌프장 유족들의 경우처럼 진상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경우처럼 사고 이후에 작업중지 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작업라인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의 경우처럼 유족과 회사가 조사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려서 진상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제출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익스프레스 화재사고 유족들의 요구 중 하나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법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잘 토론하여 요구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구를 정리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싸워왔던 산재피해가족모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요구들을 유가족만의 힘으로는 관철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료들이 함께 싸워줄 수 있는지, 피해노동자가 일했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유가족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줄 단체가 있는지에 따라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고인이 일하던 곳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나보십시오.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노동자 편에 서서 일하고 행동하는 것은 대부분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요구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 투쟁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인의 현장 동료들도 만나보십시오. 고인의 동료들은 그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또다른 피해자들입니다. 이 동료들의 증언과 지원이 투쟁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동료들이 회사측의 압박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편에 서있는 노동조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조문을 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런 단체나 사람을 알고 있다면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만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원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투쟁에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의 투쟁을 지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가겠다는 유가족의 결정이 먼저입니다.

변호사와 노무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유가족들이 회사에 요구할 것을 정리하고, 사업주에게 요구하겠다고 맘을 먹은 후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늘 긴 시간이 걸리고, 소송에 들어가면 회사가 아예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진술, 허술한 초기조사에 의해 원인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유가족은 법적 대응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다양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률적인 대응조차도 법정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싸우고, 대응해야 새로운 증거도 찾게 되고, 여론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와 노무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며, 유가족이 목소리를 낼 때에야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대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죽음을 계기로 투쟁에 나서게 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찾아보게 되는 것이 신문, 방송 등의 언론입니다. 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 언론이 계속 다뤄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잊혀질까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투쟁을 시작하면 가능한 많은 언론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밝히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언론의 눈치를 보거나 언론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은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를 유족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여론이라는 말로 진상규명 요구 투쟁을 비하하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론이 원한다고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원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왜곡하는 언론에는 항의해야 합니다. 계속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은 배제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제일 중요한 힘은 유가족이 잘 싸우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2

합의, 산재보험, 소송

| 합의

투쟁의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함부로 합의를 어기지 못하도록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들어가는 문구와 내용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합의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 예시 |

합 의 서

망 ○○○의 배우자 ○○○(이하 '갑)과 ○○○주식회사(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을은 갑에게 민법 및 그 밖의 여러 법령에 의한 일체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함)와 형사상 합의금(위로금)으로 금 ○○○,○○○,○○○ 원을 지급한다.

2. 을은 갑의 산재보험금 수령과 그 밖의 보험금(근재보험) 수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공한다.

3. 을은 2○○○년 ○○월 ○○일까지 국민은행 ○○○-○○○○○○-○○○○○(예금주○○○)로 입금한다(또는 ○회에 걸쳐 매달 ○○일에 분납하여 지급한다).

2○○○. ○○. ○○.

갑 :

을 :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음을 합의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이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추모 조형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유가족 특별 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 각 상황에 맞게 아래와 같이 문구가 추가됩니다.

+

- 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을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사내추모기간을 잡고 분향소를 설치한다.)

- 을은 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 노사민정(노동조합, 회사, 시민단체와 정부)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나. 진상조사단은 합의 후 1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다.
  다. 을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을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추모를 위해서

가. 합의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모비(조형물 등)를 건립한다.

나. 추모비(조형물)의 설치장소, 규모, 디자인, 문구는 갑이 정한다.

다. 추모비(조형물) 제작비용은 을이 지급하며, 제작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 본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남긴 각종 추모글과 추모물품은 기관에서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그동안 고인의 노고를 기려 공로패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달한다. 「故 ○○○는 ……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드립니다.」

- 본 사고와 관련한 언론인터뷰, 관계기관의 조사, 재판에서의 증언 등을 이유로 고인의 동료나 근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한다.
- 을은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해 치료를 보장하고 치료비 일체를 지원한다.
- 을은 고인의 심리부검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지원한다.
- 을은 ○○○○. ○○. ○○.까지 유가족 ○○○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며 보수는 ○○○ 수준으로 하되 경력은 추가로 인정한다.
- 본 사고에 대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 한다. 다만, 본 합의는 기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합의금 등 민감한 부분을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서와는 별도로 금전배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비밀유지약정을 두거나, 혹은 합의서 전체를 비공개로 하기도 합니다.

- 배상, 보상 문제는 별도의 부속합의에 따르고 상호 비밀을 준수한다
- 본 합의내용과 관련해서는 상호비밀을 준수한다.
-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는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즉시 지급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를 대신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는, 공적인 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산재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는 단 2장짜리의 간단한 문서입니다. 사업장이 소재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칸에 가서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찾아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해도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유의할 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는 조사 내용도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 사고사망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별도의 조사를 하기보다는 경찰조사 내용을 참고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료나 직장상사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사망자의 과실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사망자의 과실이 높더라도 산재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도 수시로 전화해서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조사가 흘러갈 경우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재처리가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25조가 열거하는 직종에 해당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는지, 사업주가 보험료는 전액 부담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보험모집인, 관련법상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운전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합의를 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금의 종류에는 요양급여(각종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장례비),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수급자격자와 아닌 자로 구분되는데, 연금수급자격자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인인 가족 등입니다(산재보험법 제63조). 매월 유족보상연금액은 1일 평균임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의 47%를 기본으로,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연금수급자격자가 1명씩 추가될 때마다 5%씩 가산

되지만 가산율이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만 지급받게 됩니다.

장의비(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의 수급권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형사재판

경찰,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사업주 측을 형사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불기소'라고 부릅니다.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로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반드시 확인하세요!

형사재판 과정을 알기 위한 방법

- 검사에게 형사재판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신청하세요(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위와 같이 검사에게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신청하면, 검사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 피고인의 구속 ·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에 관하여 "신속하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더라도 유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한, 공소제기 여부나 재판일시도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근거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슨 근거로 기소를 했는지, 공소장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나 형사재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진행이나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진상조사나 수사가 미비하거나, 검찰측의 법률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하여 또는 유족이 직접 수사와 재판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합의(소송)

민사합의를 하는 시점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고 난 다음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반대로, 민사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불문하고 합의금만큼은 산재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산재보험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기재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경우, 또는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건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경우에 민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주의 심리적인 동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의 요구사항(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금전보상을 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정해진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가족이 합의를 앞두거나, 또는 합의 직후에 돌아가신 분에 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대다수의 유가족이 겪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금전보상은 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며, 유가족의 권리입니다.

한편, 회사는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대비해서, 사보험(단체보험 등)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유가족은 회사가 사보험을 들어놓았는지, 들어놓았다면 보장액수가 얼마인지를 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과 같은 정부기관에 문의해서 고인의 명의로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가족들이 필요한 서류

- 회사와의 민사합의, 산재보험 신청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한 서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아래 서류는 최소 10장씩 발급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동사무소) : 민사합의를 할 때 필요합니다. 인감도 반드시 챙겨둡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사무소)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을 발급받아 놓으면 인감도장 없어도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병원) :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고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산재보험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
- 구조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소방)

6

합의 이후, 심리적 문제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게 깊은 상처이자 고통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남겨진 가족들, 평소 고인과 가까웠던 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험합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며,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접한 초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6
합의 이후, 심리적 문제

6.1
산재사고로 인한 유가족의 심리적 외상

갑자기 발생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건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의해 발생한 전쟁, 폭발, 산재사고 등 인적·사회적 재난은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물론 심리적 위기 반응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하거나 고인의 죽음에 견주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변화를 대수롭지 않다 여겨 무시할 경우,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심리적 변화는 관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가족이 경험하는 화, 분노, 미안함 등 초기의 심리적 변화는 병이 아닙니다.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유가족이 느끼는 것을 말하고, 알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을 제공받고, 주변과 사회가 그 고통과 목소리에 공감한다면 유가족은 점차 회복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에서 심리적 문제와 고통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이 더뎌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초기의 죄책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산재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센터, 김용균재단 등에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상처 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일상이 겹쳐져 조금 옅어지거나 가려질 뿐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그 고통은 의도하지 않아도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만큼 고통의 무게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유가족 여러분 자신과 남겨진 가족 모두의 일상과 삶을 집어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꼭,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무슨 심리 상담입니까?

··· 산재 사망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 중에는 심리 상담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때문이기도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더 강해져야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꽁꽁 묶어 두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펄펄 끓는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 넘치지 않도록 하듯이 복잡하고 무겁기만 한 마음의 무게를 덜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뭐가 좋아질 수 있나요?

···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사건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고, 사고해결, 두려움, 죄책감, 분노 등 엉켜져 있는 것들을 풀어낼 힘을 갖게 합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그로인한 감정은 감정대로 분리하면서 과도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들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금 더 명료하게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경황이 없긴 하겠지만 가까운 곳에 지원하는 활동가나 전문가가 있다면 사고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에서의 심리상담 초기에는 당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유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초기 상담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서적 변화와 어려움,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안전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받을 수 없었다면, 이후에라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 중대재해 현장에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곳에 요구하시거나 전국적 연결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김용균재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도 함께했던 심리상담 단체나 센터들과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충남노동인권센터 두리공감]

6.2

유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위기

| 외상 후 스트레스의 일반적 증상·반응

다음은 강력한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반응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도움을 요구하

거나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반복적인 꿈이나 재경험

사고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동료나 회사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을 듣는 것은 매우 힘든 경험입니다. 또한 사고 전 고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거나 서운하게 했던 일이 있을 경우 그것이 마음에 남아 유가족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린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괴로운 기억이나 생각, 어떤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불쑥불쑥 아무 때고 반복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고 반복적인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도중 어떤 계기, 어떤 물건, 어떤 사람으로 인해 괴롭고 힘든 기억이 생각나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장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거나 호흡곤란,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의 징후들 중 하나입니다.

2. 회피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생각,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회피하려 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기 보다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알아서 회피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사고를 떠올리면 느껴지는 느낌을 회피합니다. 때로는 사고나 고인을 떠올릴 수 있어 어떤 활동이나 상황을 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고 초기 유가족들이 사고나 고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인터뷰하려는 언론이나 경찰, 회사측 관리자 등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진술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인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 나아가 진실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유가족들이 심리적 회복을 하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각성상태의 지속 또는 지나친 각성상태

경계심을 지나치게 유지하거나 강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지나치게 깨어 있어 이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위의 작은 움직임이나 변화에도 과도하게 예민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에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4. 감정의 부정적 변화

예전에 즐겁게 하던 활동에 흥미를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거나 단절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무뎌진 느낌이 들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인의 사고 원인을 유가족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기간이나 사고와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세상, 타인 등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산재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또는 유가족들이 쉽게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현장에 마땅히 있어야 할 안전설비, 당연히 해야 할 안전점검과 조치 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이기에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 경과에 따른 심리적 위기 징후

다음은 사고 이후 상황에 따른 심리적 위기의 징후들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징후들이 없다고 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건종료 이후까지 무감각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 사고 초기의 징후

① 정서적 어려움

사고 초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은 '죄책감', '미안함'입니다. 반대로 고인의 죽음 자체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덮쳐 오는 듯한 공포(얼어붙음)를 느끼기도 합니다. 나아가 사고원인이나 회사·언론 등에 대한 분노감정이 들 수도 있으며, 고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고통에 오열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자체가 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감정과 정서가 지속된다면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② 생리·신체적 반응

마음에서만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넋이 나간 듯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기운이 없어 아무 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밤과 낮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흘렀는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인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삼키지 못해 식사를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고인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아이들을 못 볼 것 같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세요. 믿고 지내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집에 가자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③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대해

사람은 누구나, 충격적인 사고(사건)을 경험할 경우 그에 대처하는 심리적·행동적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충격적인 사고(사건)들은 개인이 감당하거나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찾기도 합니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이 그러한 예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조금씩 마시던 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고(사건)을 해결하는데 지나치게 몰입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일들(먹고, 자고, 쉬는 것 등)을 잊기도 합니다. 나아가 죄책감, 무기력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느껴지신다면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 보세요.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고인이 다른 가족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분일수록 고통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시신 상

태에 따라서도 고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후 고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 유가족은 사고 당시를 상상하고 그 당시 고인이 느꼈을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기도 합니다. 고인이 자녀인 경우에는 더욱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차 스트레스

고인의 사고(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에도 벅차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적절한 지원이나 조치가 없다면 때때로 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① 생업(직장)이나 직장 문제

→ 협조를 구하고 요구하세요!

산재 사망사건의 경우 행정당국(고용노동부, 공단)과 회사측(사용자, 관리자)이 절대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해결까지 가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를 위해 해 왔던 일이나 직장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생깁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휴가나 휴직 등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친지나 친구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직장에는 상황을 설명한 후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관계의 단절과 악화

→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가족들과 당분간 관계를 끊어도 됩니다!

산재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가족과 고인의 친인척들 사이에 이견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빠른 사건 처리와 산재은폐 등을 목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가족을 배제한 채 친인척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친인척이나 다른 가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본인들의 생계나 직장 등)이나 가치관

의 차이(사회분위기가 산재사망을 개인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듯이)로 유가족에게 위와 같은 협상안을 수용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인과 가장 가까운 유가족이 배제된 채 다른 친인척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가족에게 '그 정도면 됐다'며 그만할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가족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당분간 그렇게 종용하는 친인척들과는 관계를 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의 주체는 유가족일 수밖에 없으며, 고인의 부재를 앉고 살아가야 할 사람도 유가족입니다.

③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

→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세요!

회사는 다양한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를 탓하기도 하고,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며 봐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가족은 혼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핑계와 근거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회사를 꾸짖고 제대로 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세요. 유가족에게는 알권리, 회사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④ 사고 발생 이후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음

→ 회사·고용노동부·노동조합 등에 설명을 요구하세요!

유가족이 사고(사건)을 대응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스트레스 중 큰 부분이 '진행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기 어려운 용어가 많기도 하고, 현장 작업과정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수습과 대응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자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유가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요구하세요.

⑤ 남겨진 가족 문제

이차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은 가족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

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고 갑니다.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고(사건)의 경우 가족들의 신상(신분)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돌봐야 할,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다른 가족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숨긴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 내 분위기로, 엄마 또는 아빠의 표정으로 달라진 것을 느끼고 누군가의 부재 때문에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상황을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차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대응과정 전반에서 주변에 활동가들이 있다면 그들과, 믿고 지내는 친구나 다른 가족이 있다면 그 분들과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강력한 외상사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에서 회복할 힘은 나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이들과 교류할 때 만들어집니다.

6.3

돌보기의 과정

다음은 사고를 접한 이후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과정은 고인을 명예롭게 하는 일 중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사건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고인을 잘 보내드리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행동요령으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내 탓”하는 마음 버리기

2. 나에게 필요한 것 메모하기(말하기)

다른 부양가족 임시보호, 직장문제(휴가 등의 사용),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요구, (원거리일 경우) 임시 거처 등

3.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하기

회사에, 주변의 지원자들에게, 변호사에게, 다른 가족에게

4. 심리적 위기 징후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정서적인 고통의 가중, 계속되는 불면, 악몽, 숨쉬기 어려움, 우울 등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기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등

5. 평소 신뢰 관계가 있거나 믿음이 가는 사람들과 관계하기

안부전달, 필요한 것에 대한 요청, 어려움 나누기 등

6.4

작별과 애도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은 언젠가는 종결을 하게 됩니다. 유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대응했고, 합의 내용의 수준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마무리가 되는 날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고인을 보낸다는 슬픔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잘 대응한 것인가'라는 평가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장례를 치루는 것만으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작별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심리상담사와의 상담,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료적 조치 등을 받아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고인의 부재로 가족 내에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가족 내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이 늘기도 하고, 둘이서 감당했던 양육이나 부양 등을 혼자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여러 감정들이 때마다 상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적응하고 일상이 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거나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완명상, 상담, 전문의 상담 등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피해가족모임 등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 겪었던 고통, 그것을 견디고 회복했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애도는 종결이 아니라 과정이란 점에서 이러한 모임과 만나고 함께하는 것은 든든한 심리적 자원이 됩니다. 사고(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종결 이후의 상담은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부록 1

집단적 산재사고의 경우

한국의 산재유형은 떨어지고, 물건에 맞고, 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노동자가 한 사고로 사망하는 산재사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형 참사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0년 4월, 한 익스프레스가 발주한 냉동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용인SLC물류창고 화재로 작업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집단적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진행 과정이나 대처방안은 개별 산재사고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피해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 경상, 사망 등 재해자들의 상태가 다릅니다. 재해자 가족들이 연락을 받고 달려오는데,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마음도 달라집니다. 중상이라고 연락받고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 사망해서 망연자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조건에 놓인 이들이 피해자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가족들의 감정도 다르고, 경제적 조건도 다르고, 집안 상황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라서 피해자가족이라고 해도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또 실종자, 부상자, 사망자의 가족이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언어, 관례,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피해자 가족이라는 존중감이 있으면 됩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피해자가족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가족(피해자가족)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유가족(피해자가족)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진상규명에 참여하고, 회사나 정부와 협상을 잘 진행하며, 행정기관을 통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피해자가족)모임이 있어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다수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는 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해당 회사를 넘어 정부가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정부 관료들이 찾아오고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족모임이 입장을 잘 결정하여 가급적 단일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유가족의 요구와 반대되는 여론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가족모임에서는 대표나 언론 담당을 선출하여 언론에 입장을 전하게 되는데,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피해가족 전체의 이야기와 요구를 대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족모임에서 입장을 잘 맞춰서, 공식화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 인터뷰를 하는 사람마다 다른 주장을 할 경우 피해자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족모임은 여러 명이 모여서 대응하는 만큼 더 세세한 상황 공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진이 상황을 확인하고 정보를 모으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대응을 하더라도, 중요한 일은 모두가 모이는 회의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서 하는 브리핑 등 중요한 상황은 개별 유가족에게 통보하거나 개별로 소통하지 말고, 전체회의에 와서 설명하고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식도 서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임의 주기와 시간도 함께 결정하면 됩니다. 전체회의에서는 그간 진행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나,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에 요구하거나 집단행동 하

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 조건상 정기적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언제든 참여하고 말할 수 있도록 회의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혹시 참가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운영진이 꼭 회의내용을 소통해주고 의견을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족들은 가능한 피해자가족모임의 정기회의에는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족들이 함께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들을 급하게 근처 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회사의 의도 때문에 여러 장례식장에 분산하여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두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가능한 고인들을 함께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유가족들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을 같은 곳으로 모시게 되든 아니든, 유가족(피해자가족)들이 소통하고 공동 대응을 하려면 모여있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합동분향소의 경우, 그곳에 피해자가족들(유족)이 모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면 됩니다.

피해자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유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을 다른 이들에게 그냥 내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피해자가족들이 쉬는 곳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은 피해자가족들의 공간 근처에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진은 피해가족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유가족과 피해자가족들이 서로를 확인하게 되면 유가족(피해자가족)모임을 구성하고 운영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대표는 피해자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선출하되, 내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을 선출하면 됩니다. 대표가 한 명일 필요도 없고, 대표와 함께 가족모임을 이끌어갈 운영진들을 모든 피해가족이 함께 뽑으면 됩니다.

대표가 된다고 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행동도 오해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에 더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피해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와 운영진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충되기도 하고 피해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역할을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가족 전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표 혹은 운영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건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특성과 조건들을 고려하여 운영진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인지 중경상자인지,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고용형태가 어떤지 등에 따라 협상과 대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가족의 여러 특성이 운영진 구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록 2

유가족 곁의 사람들에게

1. 주변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한 제언

고인의 부모, 남편이나 아내, 자녀, 형제 등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들도 고인의 죽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애쓰고 곁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여러 이유로 주변 가족이나 친지들이 고인과 가장 가까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한 적 없는 일이 발생해서이기도 하고, 노동현장 산재사고의 특징을 잘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만 도움을 준다면,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변 가족들이 함께 해 줄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고인과 가장 가까운 유가족의 감정, 고통, 슬픔에 공감해 주세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겪는 비통한 심정은 그 누구보다 주변 가족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너무도 걱정되어 '밥 먹어라', '잠을 자라', '그래야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걱정이 고인과 가장 가까운 유가족에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옆에서 묵묵하게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둘째, 고인과 가장 가까운 유가족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유가족들은 사고 직후 소용돌이 치는 감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인이 어떻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지, 과연 회사는 안전조치들을 잘 취했는지, 응급구조는 잘 이뤄졌는지,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은폐하려는 회사에 맞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유가족에게 그 과정을 빼앗는 것은 두 번째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가장 가까운 유가족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존중해 주세요.

셋째, 조기 종결이나 축소를 요구하는 회사에 '안 된다'고 말해 주세요. 사고와 관련해 숨길 것이 많은 회사일수록, 잘못한 것이 많은 회사일수록 유가족 주변의 친지들에게 접근해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합의안을 내밀며, '이 금액 정도는 어디서도 못 받는다.', '산재 요청 해봐야 시간만 많이 걸린다.', '가족들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고 이야기하는 경우,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결정과 판단은 유가족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넷째, 유가족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살펴주세요. 평소 유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돌봐야 했던 일들은 무엇인지를 주변 가족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일상을 공개하거나 부탁하기를 어려워하는 유가족이 많습니다. 이때 주변 친지들과 가족들의 도움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유가족의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일, 비어있는 집을 가끔이라도 찾아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 등을 해주세요.

다섯째, 유가족의 판단이나 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부 친지나 가족들의 발언이나 개입을 막거나 그러지 않도록 설득해주세요. 친지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보태는 것일 수 있지만, 유가족이 사고(사건)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유가족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유가족이 스스로 결정한 대로 밀고나갈 수 있게, 주변에서 함부로 개입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유가족을 만나는 지원자들을 위한 지침

유가족을 만나는 지원자들은 다양합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일 수도 있고, 사고(사건)지역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하는 활동가일 수도 있으며, 심리치유를 위한 센터 또는 기관, 의사들과 변호사나 노무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자들 모두는 사고의 진실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해야 할 일

다음에서는 이러한 지원자들이 유가족을 지원하는데 있어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환경의 조성입니다.
유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이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이 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임시 거처, (선의라고 하더라도) 유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결정권과 통제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사고 대응을 위임해 주는 주체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가족은 지원자들과 상의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위해 묻고, 이견이 있을 때 자유롭게 이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유가족과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 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이들이 여러 지원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많은 이야기가 전달되면 유가족에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전체 체계 안에 유가족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소통 창구를 단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유가족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지침

아래 내용은 지원자들이 유가족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서 실천할, 사소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대상화하지 않기

유가족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피해자인 동시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사건을 위임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보이는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소용돌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이야기와 저녁에 한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변화를 병리화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인내심 있게 차분히 함께해야 합니다. 가끔 지원자들 일부에서 '유가족답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가족은 슬퍼하고 있거나 넋이 나간 듯 창백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입니다. 유가족은 맞서 싸울 수도 있으며, 결정할 힘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가족다운 것'은 없습니다.

② 정중하고 예의 있게 듣기

유가족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는 것과 같이, 유가족의 요구나 주장이 담긴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가족의 요구나 주장에 대해 미리 예단하거나, 현장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판단으로 요구와 주장을 중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정중하고 예의있게 듣는 것만으로도 유가족들은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③ 침해하지 않기

산재대응을 하다보면 유가족의 한 마디가 거대한 힘을 갖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이때,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결정된 일정에 동원하듯이 유가족을 배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유가족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왜 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상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④ 유가족의 어려움에 함께하기

사고 초기 유가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녀나 부모님을 양육·부양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경황없이 오게 되어 생필품이나 갈아입을 옷, 필요한 물품들은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지병(고혈압, 당뇨, 갑상선 등)이 있는 경우 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임시 거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변호사나 노무사 등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물이나 음식 등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등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유가족들 중에는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도 있고, 물·음식 등을 먹는 것 자체를 죄스러워 하거나 자신이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유가족은 경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걱정과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거나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여 유가족과 상의하여 해결방법을 찾거나, 꼭 필요한 물품은 미리 가져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상담센터, 심리지원단위, 병의원 목록을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가족과의 소통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별개로 유가족 생활지원팀이나 담당자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⑤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유가족들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빈소 앞을 떠나지 못하거나 앉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날라 오거나 발 앞에 돌부리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거나,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주저하고 꺼린다든지 하는 것도 위기의 징후입니다. 이때는 다른 지원단위(심리지원 등)와 협력하여 안정화 프로그램(상담, 이완호흡, 스트레칭 등)과 연계합니다.

⑥ 지원자들의 자기관리

지원자들에게도 심리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소위 '공감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대응의 특성상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투쟁이 길어지면 소진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나 공단, 회사 측을 상대하다보면 분노가 커지고, 동일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수습을 위해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고 장면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 경험도 심리적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대리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번이 부딪혀야 하는 높은 장벽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절망감 때문에 우울과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외상을 겪은 피해자와 동일한 증상·징후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사고대응에 몰입한 나머지 본인의 일상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상담, 심리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

3.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은 유가족을 주된 독자로 하는 안내서이지만, 당사자들 곁에 있는 활동가들도 읽게 될 것입니다. 안내서를 준비하면서 만난 유가족들은 활동가들도 유가족의 상황이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호소하기도 했고, 반대로 유가족을 지원하는 활동가들도 소진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피해당사자와 활동가가 힘을 합쳐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거나 진상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일한 '유가족'이란 없고, 각각의 산재사고는 모두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활동가' 역시 단일한 이름으로 부르기에 매우 다양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를 당한 당사자들과 가족들 곁에 있는 활동가들이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하고 활동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당사자들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라는 우리 마음 속 이미지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망사고의 유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마다, 상황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재해자의 부모인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전에 맺었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같은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의 가족들은 싸움을 결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가족들은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한 사건의 가족, 당사자 중에도 서로 입장이 다른 주체들이 섞여 있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사망사고 이후, 가족 중 한 명과 주로 소통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입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대응하는 경우, 입장이 다른 가족 사이의 갈등도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고라는 큰 고통에 놓인 유가족들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도 말이 바뀌거나, 입장이 왔다갔다 변하기도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거나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본인이 활동가인 산재 유가족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당사자의 상황'을 주변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가 용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이런 상태를 이해하면, 활동가들이 유가족의 여러 변화에 상처 입거나 소진되는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 유가족과 운동의 요구는 같고도 다릅니다

유가족의 생각은 활동가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전후에 머물고, 노동조합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산재 유가족들은 노동자나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낯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주겠다고 달려온 노동조합이나 활동가들을 쉽게 믿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두 달이 넘는 시간을 굳건히 싸운 유가족들도 처음에는 '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가족과 활동가, 당사자와 '운동'의 요구가 같고도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유가족들이 상대적으로 해당 '사건'의 해결에 집중할 때, 활동가들은 사건의 너머에 있는 구조적인 원인과 그 해결, 사건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생성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진상 규명, 사과, 보상 등 유가족의 요구와 별도로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제가 항상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가족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얻어도, 노동안전보건의 과제가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유가족이 활동을 접어도 우리의 투쟁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의 이런 인식 차이가 중요한 고비에서 판단의 차이를 낳거나,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부인하거나 없애려 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서로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더 옳거나 중요하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투쟁과 활동을 모색합시다.

○ 여러 번,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충분히, 쉽게, 유가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안내해야합니다. 활동이나 투쟁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유가족들은 활동가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가

까운 사람이 사망할 경우 황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활동가들과 함께 긴 시간 투쟁한 유가족들도, 처음에는 활동가들의 말을 30%도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설명은 오해나 이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야기 도중, 잘 이해했는지 되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설명은 경청과 존중의 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나 욕구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면서 듣고 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활동가와 투쟁 상황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활동가가 유가족의 마음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할 수는 없고, 모두에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필요나 욕구는 뒤로 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받아 주고 공감하는 데 몰입하다 먼저 소진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간혹, 투쟁 상황에 깊이 몰입되어 유가족들의 감정에 지나치게 이입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한 책임감과 부채의식으로 상황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외상을 겪은 피해자들과 동일한 증상·징후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되거나,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투쟁이나 활동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도 고통과 아픔, 소진이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한 당사자와 가까운 사이였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던 활동가라면 유가족 못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반복되는 사고 대응 속에서 회사측이나 정부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답답함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가족의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하는 것 못지 않게, 본인들의 상태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생각하십시오

활동가들이 특정 사고 대응에 결합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가족, 재해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가족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생각한다면, 운동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과를 남긴 것입니다.

활동가들이 흔히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 '보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혹은 운동단체가 유가족이나 재해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의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유가족들이 활동가들의 연대를 회사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한 활동가 당사자는 충격을 받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내놓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합의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 사고 대응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경험도 그만큼 쌓였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은 결국 사람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무수한 좌절과 실패를 안고 있습니다. '유가족' 혹은 '산재 피해당사자' 역시 운동 과정에서 조직해 나가야 할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 100%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활동가들도 인정해야 합니다

활동가와 유가족은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제대로 된 보상와 진정한 사과를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한 번의 투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가벼이 여기는 제도와 문화, 체계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스러운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무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식적이고 (가능한) 공개적인 방식의 협상, 협상의 각 국면에서 유가족들과의 투명한 소통, 함께 투쟁하는 단위들 사이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찾는 길

김용균재단